



돼지콜레라 및 뉴캐슬병

예방접종 실시 명령

“백신 접종 안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 부과”

- 농 릫 부 -

농림부고시제1998-59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돼지콜레라 및 뉴캐슬병 예방접종실시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8년 9월 5일

농 릫 부 장 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돼지 및 닭의 소유자에게 각각 돼지콜레라 및 뉴캐슬병의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여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고 나아가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수출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등) ①돼지콜레라 및 뉴캐슬병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과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돼지콜레라의 경우 :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를 대상으로 하며, 예방접종 실시책임은 당해 돼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로 한다.

2. 뉴캐슬병의 경우 : 전국의 부화장에서 부화되는 병아리를 대상으로 하며, 예방접종 실시책임은 당해 부화장의 소유자등으로 한다.

②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은 돼지 사육시설에서,

뉴캐슬병 예방접종은 부화장에서 각각 당해 예방약의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뉴캐슬병의 2차 예방접종과 수입 병아리에 대한 예방접종은 당해 병아리를 입식한 소유자등이 실시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유자등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공동방역사업실시단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예방접종을 지원하게 하거나 해당 지역의 양돈·양계 등 생산자단체에게 예방접종 실시와 관련한 사업의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제3조(실시기간) 돼지콜레라 및 뉴캐슬병의 예방접종 실시기간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1999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예방접종실시대장 등) ①예방접종을 실시한 소유자등은 그 결과를 돼지콜레라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예방접종실시대장에, 뉴캐슬병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예방접종실시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소유자들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가축을 판매 또는 분양한 때에는 당해 가축의 예방접종 사실을 가축을 사거나 분양받는 농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예방접종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가축 방역관의 사실확인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화장의 경우 병아리 수송 상자에 예방접종 내역과 2차 예방접종 예정일 등을 표시하여 출하하는 때에는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확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예방접종 확인·지도감독) ①도지사는 가축방역관 또는 공수로 하여금 관내 돼지 사육농가 및 부화장에 대하여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닭의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을 찾아낸 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돼지콜레라 및 뉴캐슬병의 예방접종 실시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돼지콜레라 및 뉴캐슬병의 예방접종확인서. 다만, 소유자들이 국가방역용 예방약의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예방약을 구입하여 접종한 경우에는 예방약 구입 영수증을 추가한다.

2. 공동방역사업실시단운영요령(농림부훈령 제 882호, '96.12.31.) 별지 제1호 서식의 예방접종증명서

3. 공수의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교부한 수의사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예방접종증명서

4.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주사접종증명서

5. 기타 도지사 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혈청검사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방접종의 실시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③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필요시 돼지 사육 농가·부화장 또는 도축장 출하가축에 대하여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도 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소유자들이 예방접종사실 확인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최종판정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실시한다.

제6조(과태료 부과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돼지콜레라 및 뉴캐슬병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4조제1항 제2호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7조(적용의 예외) 동물용의약품의 제조를 위한 시험용·학술연구용에 사용하기 위한 가축과 특수 사육·판매목적 등의 이유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방접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돼지콜레라 및 뉴캐슬병의 예방접종을 실시한 소유자들은 이 고시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3조(예방접종실시대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소유자들이 돼지콜레라 및 뉴캐슬병의 예방접종 사실을 기록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예방접종실시대장 등을 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예방접종실시대장 등은 이 고시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실시대장으로 본다. **養豚**